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23
------------	------

제출연월일: 2017. 12. 5.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18. 1. 18.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 나.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
- 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라.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마.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안 제13조)

3. 근거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2017. 10. 30. ~ 2017. 11. 20.(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
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
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이 곤란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
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
다)

4.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
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

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

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 · 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 · 통신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통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

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종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 발생 일시				
피해 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 · 실종, [] 부상(부상 정도:),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 · 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피해 물량	면허 · 허가 · 등록 번호	①	②	③
	신고	①	②	④
피해 구분	확정	①	②	③
	피해 원인	①	②	③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 · 군 · 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종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울산광역시 종구청장이 응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울산광역시 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울산광역시 종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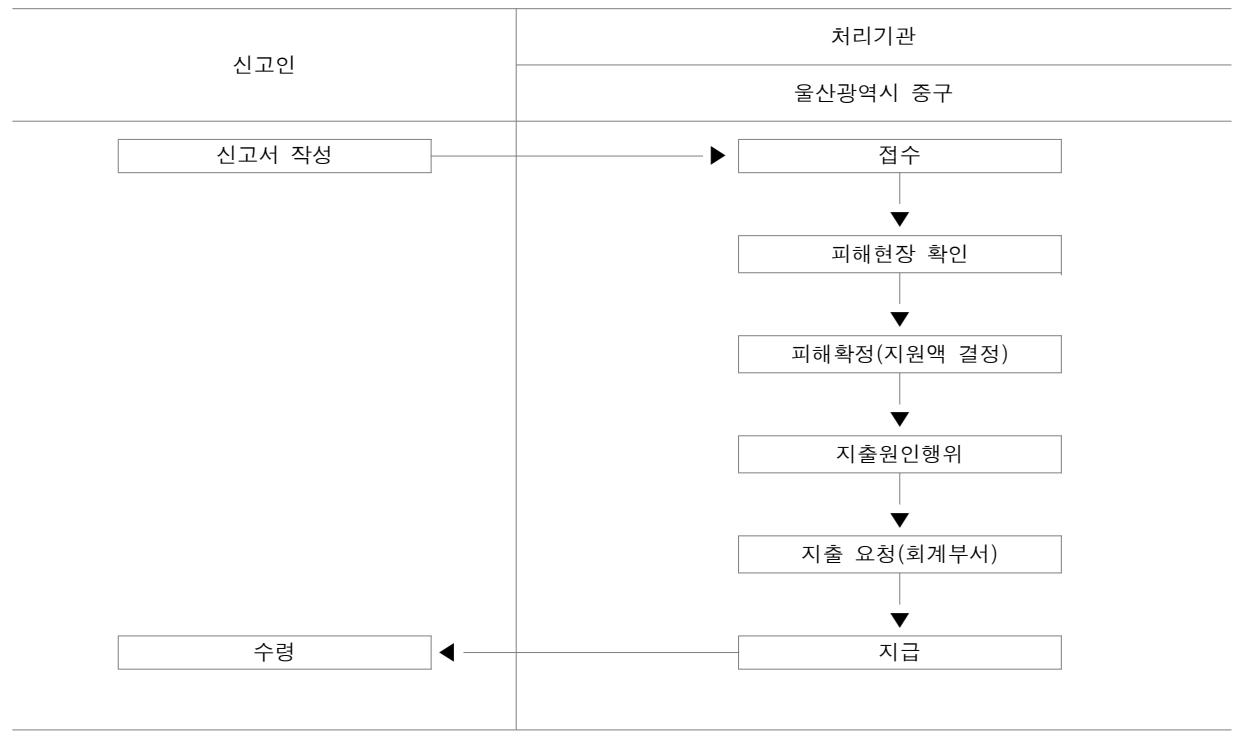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근 거 법 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 행	개 정
<p>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u></p>	<p>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u>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개정 시행일 : '18. 1. 18)</p>